



월간 협회소식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751-6601, FAX: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보시다.

제29회 정기총회 개최, 제12대시회장에 (주)서한 조종수 대표이사 선출



우리시회는 5. 20(수) 11:30 그랜드호텔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서한 조종수 대표이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감사에는 반석종합건설(주) 구자운 대표이사가 선출되었으며 기타 대의원, 간사등 임원은 신입회장에게 선출을 일임하였다.

신임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오는 6월26일부터 2012년 6월25일까지이다.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을 대신하여 권영세 행정부시장, 차영조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 및 건설 유관단체장 등과 대표회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2008년도 결산(안)을 원안 승인하고 ▶회원사 수주기반 환경개선 ▶건설제도 합리적 개선추진 ▶협회구심력강화 및 회원 서비스 확대 ▶건설업위상제고의 4대 사업목표를 포함한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 통과하였다.

한편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된 조종수 당선자는 “90년대 ‘건설명가 대구’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새로운 희망의 시대, 건설 르네상스 대구 부흥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향후 지역건설업계가 위기극복을 위해 나갈 방안으로

- 지역일감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지역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확대
- 회원사간의 상호이해 증진과 회원사간 친목 도모를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임기기간동안 전력매진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 조종수 당선자 주요 경력

- 74. 2. 영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76. 6. ROTC 12기 공병중위 전역
- 83. 3. (주)서한 입사
- 03. 5. (주)서한 대표이사(현)
- 05. 6. 국제로타리 3700지구 R.C 회장 역임
- 06. 6.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감사(현)
- 09. 4. 대구상공회의소 상공위원(현)

도시철도 3호선 지역업체 대거 참여 50%정도 수주

대구시가 도시철도3호선(8개공구) 건설공사를 대안입찰로 집행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지역 업체 40%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한 결과 지난 5.12 ~ 5.21일까지 실시된 설계심의 및 평가에서 지역 업체가 공사금액의 50.1%인 3,445억원 정도 수주의 성과를 거두었다.

당초 500억원 이상 공사의 참가자격(BBB-이상)을 갖춘 지역 업체 46개사 중 70%인 32개사가 참여하여 20개사가 수주하므로서 어려운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업체 실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철도 3호선은 총사업비 14,282억원(공사비 6,875, 차량구입비 2,211, 기타 전가통신과 보상비 등 5,196)을 투입하여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총연장 23.7km, 정거장 30개소, 차량기지 1개소, 주차기지 1개소로서 2009. 6월말에 착공하여 2014년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8개공구 중 7공구(궁전맨션삼거리 ~ 지산네거리) 연장 3.4km 구간은 우리지역 화성산업이 주관사로서 지역 업체로만 구성·입찰에 참가하여 수주한 것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지역건설업체 능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현황

공사명	구 간	규모(Km)	공사비(억원)
계	8개공구	L=23.7 정거장 30, 차량기지1, 주차기지1	6,875
1공구 (차량기지구간)	차량기지-팔거천시점	L=2.30 정거장 3, 차량기지1	957
2공구 (팔거천구간)	팔거천시점-매남교	L=2.95 정거장 4	697
3공구 (매천지구구간)	매남교-팔달교	L=2.62 정거장 3	698
4공구 (팔달로구간)	팔달교-고성네거리	L=3.51 정거장 4	1,009
5공구 (달성로구간)	고성네거리-명덕네거리	L=3.42 정거장 5	1,015
6공구 (명덕로구간)	명덕네거리-궁전맨션삼거리	L=3.68 정거장 5	1,035
7공구 (동대구로구간)	궁전맨션삼거리-지산네거리	L=3.40 정거장 3	680
8공구 (지산로구간)	지산네거리-주차기지	L=1.79 정거장3, 주차기지1	784

4대강 살리기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추진

정부에서 추진중인 4대강살리기 사업에 지역 업체 의무적 참여 비율이 턴키공사 20%, 기타공사 40%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는 지역건설업체 최대한 수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지방의 기대에 크게 미흡하므로 아래와 같이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해줄 것을 대구시에 건의하고 정부여당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하였다.

◎ 건의문 요지 ◎

■ 경위

- 지난해 12.15(월) 정부는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하고, 회의를 주재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지역건설사들이 4대강사업에 최대한 많이 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으며
- 그 이후로 지역건설업체 최대한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동 녹색뉴딜사업의 주요 목적임을 정부여당이 각종 언론을 통하여 누차 강조
- 이에 각 지방정부, 지역건설업계, 시민들은 지역건설업체 참여도가 대단히 클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안)

- 4대강에 보, 댐(저류지), 하도준설, 노후제방정비, 생태하천, 자전거길, 하수처리시설 등 종합정비 사업 실시(1단계 2012까지, 2단계 2013~)
- 정비사업 잠정 공사금액 : 1단계 18조6,000억원 정도
 - 낙동강 10조1,000억원, 영산강 3조원, 금강 2조7,000억원, 한강 2조 3,000억원
- 6월중 1단계 사업으로 턴키공사부터 우선 발주 예정, 1개공구당 공사금액 2,000~4,000억원 정도 예상

■ 지역건설업체 참여방안 (재정부 추진중)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9.4.28)
- 근거마련 후 재정부장관 고시(회계예규)로 지역 업체 의무참여비율 명시예정
 - 현재 검토중인 지역 업체 참여비율(안) : 턴키공사 20% 이상, 기타공사 40% 이상

■ 요망사항

- 현재 재정부가 검토중인 지역 업체 의무참여비율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치에 상당히 미흡하므로 참여비율이 상향되도록 협조를 요청
 - 턴키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의무참여 비율 20% → 최소한 50%이상으로 상향
 - 턴키이외 기타공사(일반공사)도 40% → 70%이상 수준으로 상향

건설업 영업범위폐지등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5. 21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하나로 건설업 자간 영업범위폐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우리사회는 영업범위제한 폐지, 3년내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 발생시 의무적 등록말소규정 신설등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영업범위 제한 및 수급인 자격제한 폐지(안 제16조 및 제25조 삭제)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 따라 능력 있는 업체 자율적 선택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개선(안 제29조)
 -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은 허용하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은 금지
- 포괄보증제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 최저가대상공사 중 일정낙찰률 미만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 재장비대금(하수급인이 계약한 자의 대금 포함) 전체를 보증, 보증료는 원가계상
- 뇌물수수입찰담합의 경우, 2진아웃제 도입 (안 제81조의2 및 제83조제1항제13호 신설)
 - 과징금 부과받고, 3년 이내 재유망시 법인 등록말소
 - 1회 위반시 뇌물수수는 해당금액의 20배 이내, 입찰담합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범위 내 과징금 부과
- 발주자가 시공업체 선택시 필요한 정보 제공확대(안 제24조제1항)
 - 국토부장관이 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에 건설업자의 보증 및 행정제재처분 포함,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에 제공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공사(300억 미만 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안 제31조)
-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완화(안 제40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 시행령 개정안 내용 ◎

- 건설업종 추가등록시 등록요건 완화(안 제16조 및 별표2)
 - 자본금 : 이미 인정받은 자본금의 2분의 1이내, 1회 한해 중복 인정
 - 기술자 : 동일 종류등급인 경우 1회 한해 중복 인정

2008년도 건설공사실적등 평가완료, 증명발급개시

우리협회가 지난 2월과 4월에 신고받은 2008년도 건설공사실적, 하도급직불실적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어 6. 1부터 증명서를 발급 (인터넷 발급가능)하고 있다.

하도급직불실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50억원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시 적용되는데 우리시회 회원사 80개사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경영상태 평가결과는 중간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확정후 7. 1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 발표

건설교통부에서 우리협회에 평가를 위탁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가 지난 5. 30자로 발표되었으며 우리시회 회원사의 경우 79개사가 1년간 입찰에서 우대를 받게 되었다.

◆ **신청기간** : 1차 실적신고 접수 기간내

◆ **평가결과(회원사기준)**

점 수	업 체 명
90점이상 (7개사)	삼아, 홍일, 성북, 대덕, 팔공, 에스엠, 청진
80점이상 (39개사)	화성산업, 청구개발, 에스디, 신성, 국태, 삼진, 세창, 대창, 빅스타, 서우, 명신, 선우, 동양, 홍성, 신흥, 대마, 미도, 서방, 반석, 송산, 서광, 삼하, 명가, 성의, 시그마, 진덕, 우인, 현창, 유창, 인산, 예진, 건구, 오상, 협성, 범진, 보국, 인주, 내외, 청풍
70점이상 (21개사)	서한, 보선, 한라, 유진, 도화, 문화, 신고려, 수성, 평산, 대한, 명국, 동우, 태백, 남부, 원양, 대일, 벽산, 동화주택, 현암, 이수, 디에이치
60점이상 (12개사)	씨앤유방, 화성개발, 동서, 동화건설, 성진, 성도, 디아이, 익산, 인터볼고, 대농이앤지, 선일, 디비디

◆ **적용기간** : 2009. 6. 1부터 다음연도 발표일 전일까지

◆ **평가결과에 따른 우대사항** : 적격심사 신인도 및 시공능력 평가 시 우대

- 조달청 기준
 - 90점이상(2점), 80점이상(1.5점), 70점이상(1점), 60점이상(0.5점)
- 행자부 기준
 - 90점이상(3점), 80점이상(2.2점), 70점이상(1.4점), 60점이상(0.5점)
- 시공능력평가시 : 3년간 연평균실적액 기준 일정비율 가산
 - 90점이상(6%), 80점이상(5%), 70점이상(4%), 60점이상(3%)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수성구 범어3동 33-10 범무빌딩 406호
전화 : (053) 752-3100 팩스 : (053) 756-2607

사업자인 건축주의 책임 등에 대하여

1. 사 례

주식회사 甲은 자신들 소유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판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한 건축주이고, 乙은 빌딩을 신축한 시공자이며, 丙은 위 신축공사 중 일부인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업체이다. 그런데 위 丙이 지반굴착 과정에서 인근 토지에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여 인근 토지에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인근 건물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때 건축주 甲, 수급업체 乙, 하수급업체 丙의 책임은 어떠한지.

2. 하수급업체 丙의 책임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1항에서는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다. 사례의 경우 하수급인 丙은 이 사건 신축공사장에서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근 토지에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인근 토지 지상 건물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에 위협을 초래한 것**이므로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원수급업체 乙의 책임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원수급업체인 乙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하수급업체인 丙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근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丙과 함께 책임(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4. 건축주인 주식회사 甲의 책임

가. 민법 757조에 따르면 도급인(건축주)은 도급관련 일에 관련하여 건축주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그러나 사례와 같이 건축주가 **'사업자인 경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사업자인 건축주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환경오염에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된다**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다. 따라서 건축주이자 사업자인 주식회사 甲은 자신의 사업장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자신의 잘못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건축주 甲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757조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9. 5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격	전월가격	금월가격	수급동향	비고	
철근	보통철근	D10mm	756,000	756,000	전년대비 수요량이 20~30% 감소로 인해 가격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급은 원활함	
		D13mm	746,000	746,000		
		D16mm	741,000	741,000		
	고장력 철근	D10mm	761,000	761,000		
		D13mm	751,000	751,000		
	D16mm	746,000	746,000			
후판	SM490B	1,050,000	880,000	금년 철광석 가격 15~18% 인하로 인하여 수급 무난함	0 단위: 개 0 현장도착도	
H형강	100X100X6X8mm	890,000	890,000	약보합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급사정 양호함	0 단위: M/T 0 현장도착도	
	300X300X10X15mm	890,000	890,000			
	400X400X13X21mm	950,000	95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kg	3,300	3,650	벌크시멘트 가격 14%인상으로 보통시멘트가격 11.2% 인상되었으며 수급은 원활함	0 단위: 포 0 대리점-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kg	9,000	9,000			
레미콘	# 57(25-240-15)	49,700	49,700	시멘트가격 인상으로 가격인상소재지 있으며 수급 원활함	0 단위: m³ 0 현장도착도	
	#467(40-240-15)	48,700	48,700			
벽돌	㉔190X90X57mm	45	45		0 단위: 개 0 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20,000	20,000			
자갈	자연 자갈	#57 25mm	13,000	13,000	수요감소로 전체적인 수급에 현재 큰 어려움 없음	0 단위: m³ 0 시내도착도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mm	9,000	9,000		
		#57 25mm	13,000	13,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 9~12X4.5	1,020	1,020	별목지양으로 생산량감소세어나 대체재로 인하여 수급 원활함	0 단위: 才 0 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 X3~3.6	1,180	1,180		

회 원 현 황

■ 회원수 : 171개사

구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1	63	15	3	172	3
중구	9	2		1	12	
동구	11	8	2	1	22	
서구	4	4			8	
남구	10	5	1		16	
북구	9	13	2		24	
수성구	26	20	2		48	
달서구	8	9		1	18	
달성군	14	2	8		24	

※ 신입2, 전입2, 전출1

■ 신입회원

상 호	업종 및 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원영건설(주)	토건160241	박 노 근	2009.05.08	782-5800
(주)정우종합건설	건축30009	김 보 옥	2009.05.28	753-9181

■ 전입회원

상 호	업종 및 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우보건설(주) (충북에서)	토목926 건축1991	권 오 성	2009.05.15	744-0142
(주)원화종합건설 (경북에서)	토목60150	김이 명준 이명현	2009.05.27	784-4820

■ 건교부 위탁업무 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기 간	신규	주기적신고	기재사항변경	양수도(합병)	계
금월 (2009.05.01~05.31)	3	5	7	0	15
누계 (2009.01.01~05.31)	5	24	40	1	70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원 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성의건설	박선일, 윤경옥 대구 북구 서변동 136-3	박 선 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1 108-3, 2중	625-0658
대표자 소재지	영남건설(주)	곽 동 식 대구 동구 신원동 102	최 원 중 대구 수성구 벌어2동 47-4	753-6000
상호 대표자 소재지	우공토건(주)	광개토종합건설(주) 손기숙 대구 북구 침산동 644-5	우공토건(주) 전병의 대전 동구 대동 146-1 대동크리닉 601	042-286-0486



❖ 제12대 회장 취임식 개최

- 일시 및 장소(잠정) : 2009. 6. 26(금) 15:00 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홀
- 참석대상 : 회원사 대표이사

❖ 2009년 제7회 교육과정 <건설원가관리 실무강좌> 실시

- 교육일시 : 2009. 6. 16(화) ~ 6. 19(금), 비합숙 4일 전일 교육
- 장 소 : 서울 중구 태평로건설학회관(서울시청 뒤)
- 교육훈련비 : 회원사 1인당 35만원
(고용보험에서 9만원정도 환급지원)
- 문 의 : 대한건설협회 총무실 교육과장 (02)3485-8223

회장동정



❖ 전국 시도 회장 협의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5. 15(금) ~ 5. 16(토) 제주도
- 하신일 : 건설업계 현안 협의

❖ 제29회 정기총회 주재

- 일시 및 장소 : 5. 20(수) 11:30 그랜드호텔
- 하신일 : 시상 및 부의안건 처리등 총회 주재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다